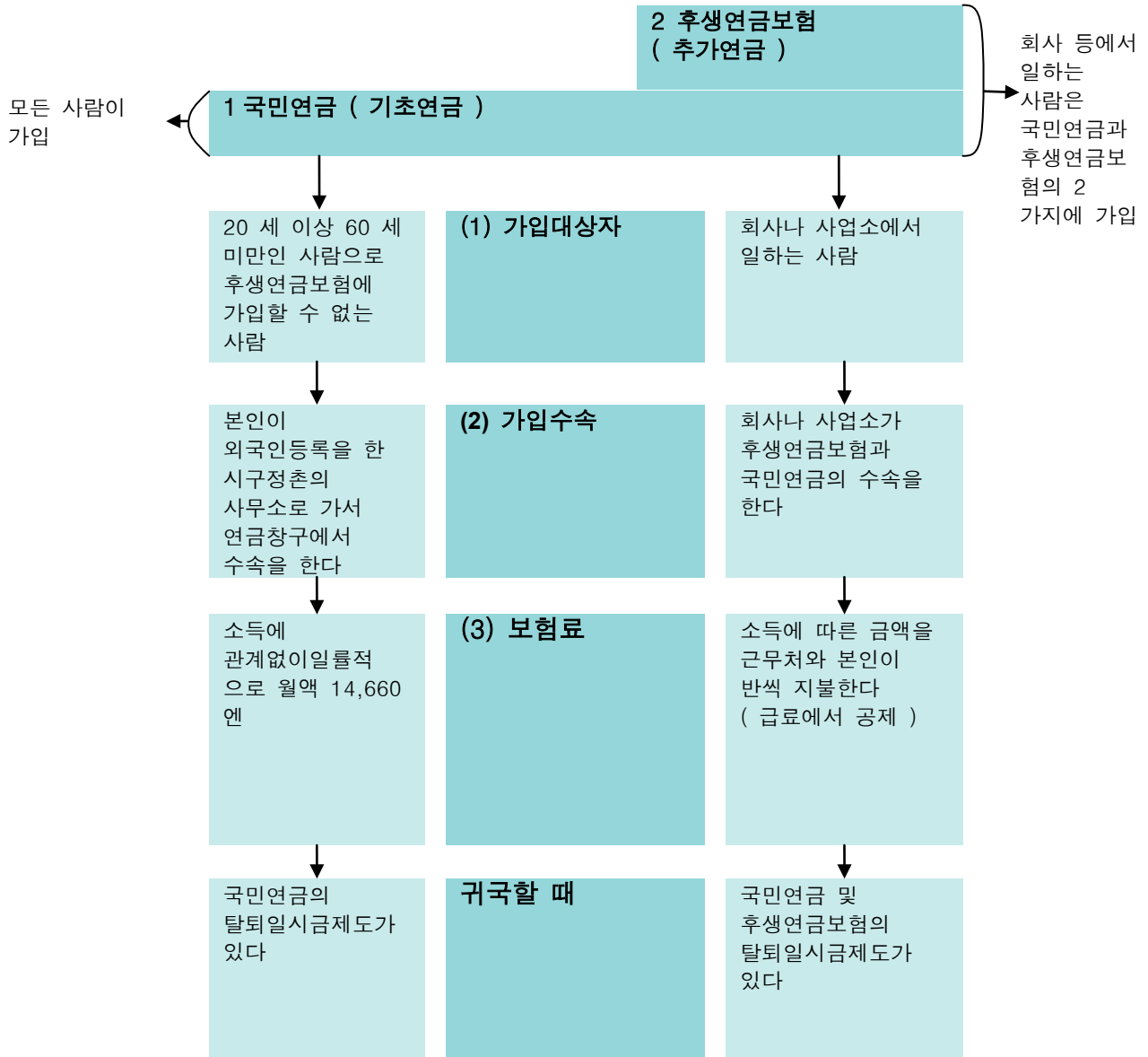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이 되었을 때에 연금의 지급을 받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나 장애, 사망 등 만일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에는 공적연금제도의 기초로서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노령 장애 유족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원 등이 가입하여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보수비례연금」을 지급하는 후생연금보험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1-1 국민연금의 가입

(1) 가입연령 등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인 분은 외국분을 포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무처에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수속은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자기자신이 직접 수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입수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감(본인이 신고서에 직접 서명할 경우는 불필요)을 지참하여, 시구청촌의 사무소 연금창구로 신고를 합니다.

(3) 보험료의 지불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액 14,660 엔(헤이세이 21 년도)입니다. 사회보험청으로부터 1 년분의 납부서가 매년 4 월에 배달됩니다. 이 납부서를 갖고 우체국이나 은행의 창구, 편의점 등에서 납부를 하거나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입)이 적은 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때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보험료의 지불이 유예되는 「학생급부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각종학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 등 (법정면제를 제외)은 원칙적으로 매년 수속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연금담당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다언어생활정보



G 연금

▶ [G 연금 의 TOP 으로](#)

●면제 등이 되는 소득(수입)의 표준

면제 등의 종류	소득(수입)의 표준			일부납부액 (월 액)	연금액의 계산
	단신세대	※2 인세대	※4 인세대		
전액면제	57(122)만엔	92(157)만엔	162(257)만엔	----	2 분의 1
젊은이 납부유예				----	----
4 분의 3 면제	93(158)만엔	142(229)만엔	230(354)만엔	3,670 엔	8 분의 5
반액면제	141(227)만엔	195(304)만엔	282(420)만엔	7,330 엔	8 분의 6
학생납부특례				----	----
4 분의 1 면제	189(296)만엔	247(376)만엔	335(486)만엔	11,000 엔	8 분의 7

※2 인세대는 부부만, 4 인세대는 부부·아이 2명(16세 미만)에서의 표준입니다.



1 국민연금

1-2 급부의 종류

(1) 노령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면제된 기간 등을 합쳐서 25 년 이상일 때는 65 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되신 분이나 20 세 전의 장애로 장애자가 되었을 때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복지연금을 받고 있던 분, 20 세 전의 장애에 대해서는 소득 등에 의한 지급제한이 있습니다.

(3)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의 사망, 또는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자격기간(원칙적으로 25 년)을 충족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18 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아내, 혹은 아이(18 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 또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20 세에 달할 때까지)에게 지급됩니다. 단, 사망한 자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종료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것이 조건입니다.



1 국민연금

(4) 탈퇴일시금 (귀국할 때)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에는 「탈퇴일시금」의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 체류중에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일본을 출국한 후 2 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것은 시구정촌 사무소의 연금담당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 청구에 대해서

청구조건	제출서류	첨부서류
국민연금을 6 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일본 출국 후 2 년 이내에 청구할 것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1 여권의 복사(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2 불입처인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 「은행의 계좌증명인」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은 것) 3 연금수첩

●국민연금의 탈퇴일시금의 금액(헤이세이 21 년도)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	일시금의 금액
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	43,980 엔
12 개월 이상 18 개월 미만	87,960 엔
18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131,940 엔
24 개월 이상 30 개월 미만	175,920 엔
30 개월 이상 36 개월 미만	219,900 엔
36 개월 이상	263,880 엔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면제종류에 따라 기간의 계산이 다릅니다.

4 분의 3 면제→4 분의 1 월

반액 면제→2 분의 1 월

4 분의 1 면제→4 분의 3 월

출전:사회보험청



2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보험은 회사원 등이 가입하여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에 추가되어 「보수비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 후생연금보험의 가입

(1) 가입대상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회사에 상시 고용되는 한 외국분에게도 후생연금보험이 적용되어, 이것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파트종업원인 경우에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통상 사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의 대강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가입수속

가입수속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합니다. 근무처 또는 사회보험사무소에 문의합니다.

(3) 보험료의 지불

보험료는 근무처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합니다만, 그 금액은 노동자의 월급이나 보너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험료의 지불은 근무처를 통해 행합니다. 상세한 것은 사회보험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2 후생연금보험

2-2 급부의 종류

(1) 노령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분이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자격기간을 충족시켰을 때(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면제된 기간 등을 합쳐서 25 년 이상일 때)는 65 세부터 노령기초연금에 추가되어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 중 장애로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때, 장애기초연금에 추가되어 장애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해 국민연금의 유족기초연금에 추가되어 유족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2 후생연금보험

(4) 탈퇴일시금 (귀국할 때)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탈퇴일시금」의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 체류중에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일본을 출국한 후 2 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것은 사회보험사무소의 연금담당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 청구에 대해서

청구조건	제출서류	첨부서류
후생연금을 6 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일본 출국 후 2 년 이내에 청구할 것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1 여권의 복사(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2 불입처인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 「은행의 계좌증명인」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은 것) 3 연금수첩

다언어생활정보



G 연금

■ [G 연금 의 TOP 으로](#)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의 금액

피보험자 기간	일시금의 금액 소수점 이하 1 단위 미만 사사오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1)×지급율(대상보험료율(※2)×50%×6)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1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18)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24)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30)
36개월 이상	평균표준 보수액×지급율(대상보험료율×50%×36)

※1 평균표준보수액:피보험자 기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월의 표준보수월액과 표준상여액의 총액을 해당 피보험자 기간의 월수로 나누고 얻은 금액

※2 대상보험료율:최종월(마지막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을 말함)이 속하는 해의 전년 10월의 보험료율(최종월이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우에는 전전년 10월의 보험료율)을 이 표에서 편의적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출전:지가사키시 홈페이지

